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
(운영위원회 제안)

의 안 번 호	2022-14

발의연월일 : 2022. 1. .
발 의 자 : 운영위원장

1. 의결주문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2022. 1. 13. 시행된 개정 지방자치법으로 인해 인사권이 의장에게 이양됨에 따라 의회 내 사무의 직무대리 규칙 마련 필요

3. 주요내용

가. 규칙의 목적을 규정함(안 제1조)

나. 법정대리 및 지정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2조, 제3조)

다. 대리하는 자의 책임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4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103조

나. 협조부서 및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다. 입법예고 : 해당 없음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규칙 제 호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회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,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법정대리)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 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(이하 “공무원”이라 한다)이 결원, 출장, 기타사고(이하 “사고”라 한다)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(이하 “대리”라 한다)한다.

1.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.
2.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.
3. 전문위원(5급)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상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.

제3조(지정대리)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.

② 제1항의 대리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, 대리를 지정할 때에

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.

제4조(책임)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붙임	관계법령

❑ 「지방자치법」 제103조

제103조(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)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.

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·감독하고 법령과 조례·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·교육·훈련·복무·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.